



논산을 새롭게
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	제122호
------	-------

<p>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·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25. 8. 29.

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22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8. 29.
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이 폐지되고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 법률을 현행화하고, 주민자치위원의 책임성을 확보 및 불성실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개정법률 반영(안 제1조, 제5조, 제18조, 제21조)
- 나. 위원의 선정 비율 조정(안 제9조)
- 다. 위원의 의무 및 해촉 규정 구체적 명시(안 제17조 및 제21조)
- 라. 연간 운영계획 보고기한 조정(안 제3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기타사항

1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[기획감사실-8778(2025. 8. 1.)]

- 2)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[복지정책과-24264(2025. 7. 28.)]
- 3) 규제심사: 대상아님[예산실-8323(2025. 7. 29.)]
- 4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5. 7. 25. ~ 2025. 8. 14. 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5)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- 6) 충청남도 소관실과: 충청남도 자치행정과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및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”를 “및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주민자치회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‘특별법’이라 한다)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 중 “60”을 “50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40”을 “50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3항 중 “참석”을 “참석하여야 하며”로, “분과위원회에 1개 이상 참여·활동을 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없이 정기회의를 3회 이상 불참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”를 “분과위원회에 1개 이상 참여하여야”로 한다.

제18조 중 “위원은 「특별법」 제29조제2항”을 “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4호”를 “제5호”로, “제5호부터 제7호”를 “제6호부터 제8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특별법 제29조제2항”을 “특별법 제40조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6호(중전의 제5호) 중 “특별법 제29조제2항”을 “특별법 제40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제1항제5호부터 제7호”를 “제1항제6호부터 제8호”로 한다.

5.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에 3회 연속 또는 임기 중 5회 이상 불참한 경우

제34조제1항 중 “읍·면·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”을 “읍·면·동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 1개월 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자 치 행 정 과 장	김 영 기
	새 마을 자 치 팀 장	안 정 준
	담 당 자	문 지 애 (746-5242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2조 및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기능) 주민자치회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‘특별법’이라 한다)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제9조(위원의 선정)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제9조의2 규정에 따른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.</p> <p>1. 정원의 100분의 60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및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기능) 주민자치회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‘특별법’이라 한다)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위원의 선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50----- -----</p>

2. 정원의 100분의 40은 당해 읍·면·동 소재 각급 학교·기관·단체 및 기타 읍·면·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 받은 사람.(단서 신설 2020.7.10.)

② ~ ⑩ (생략)

제17조(위원의 의무) ①·② (생략)

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참석,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개 이상 참여·활동을 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없이 정기회의를 3회 이상 불참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④ (생략)

제18조(정치적 중립)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「특별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,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

2. ----- 50-----

② ~ ⑩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위원의 의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 참석하여야 하며-- 분과위원회에 1개 이상 참여하여야 -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정치적 중립) -----
--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

동안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제21조(위원의 해촉)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,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- 1. 2. (생략)
- 3. 선거운동을 하거나,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

4. (생략)
<신설>

5.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
6. 7. (생략)

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

-----.

제21조(위원의 해촉) ① -----

----- 제5호-----
----- 제6호부터 제8호-----

-----.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----- 특별법 제40조제5항-----

4. (현행과 같음)
5.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에 3회 연속 또는 임기 중 5회 이상 불참한 경우

6. 특별법 제40조제5항-----
--

7. 8. (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)

② -----

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또는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위원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34조(보고) ① 읍·면·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----- 제1항제6호부터 제8호

-----.

제34조(보고) ① 읍·면·동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 1개월 전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해당없음

2. 비용추계결과**가. 추계의 전제**

- 해당없음

나. 추계 결과

- 해당없음

3. 작성자

자치행정과장 김 영 기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2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, 시·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·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

□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

제40조(주민자치회의 설치 등)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(이하 “자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

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